

# 교원업적평가 규정

전문개정 2013.10.07., 개정 2014.12.16., 개정 2015.09.01., 개정 2016.07.19.,  
개정 2017.04.25., 개정 2018.05.31., 개정 2019.05.22., 개정 2020.07.16., 개정 2022.02.23.,  
개정 2024.03.01., 개정 2025.03.24., 개정 2026.03.26.

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해전대학교 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교원의 업적평가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적용범위)

본교 교원의 업적평가에 대한 기준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기준에 의한다.

## 제3조 (기본원칙)

평가는 다음의 각호에 입각하여 시행한다.

- ① 평가기준은 학과별, 전공별 특수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정한다.
- ② 평가는 객관성, 공정성, 신뢰성을 유지한다.
- ③ 주관적인 요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제한다.
- ④ 평정결과는 승진, 재임용, 포상, 교육, 복지 등 제반 인사관리에 활용한다.

## 제4조 (평가기간 및 기준)

- ① 평가는 연1회 실시하며 기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- ② 연구실적은 평가기간 중 발표된 것에 한정한다.
- ③ 증빙서류 미제출 및 기술 내용이 부실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.
- ④ 신설학과 및 기타 사유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전체교원 평균치를 적용한다. <개정 2014.12.16., 2025.03.24.>
- ⑤ 계열(학과)공통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모집 단위별로 작성한다.
- ⑥ 평가기간 중의 인사이동 자는 현 소속으로 평가한다.(단, 6개월 이상 근무자)<개정 2017.04.25.>
- ⑦ 연봉제 적용을 위한 동점자 처리는 각 호의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.
  1. 산학협력활동영역
  2. 교육활동영역
  3. 연구활동영역
  4. 봉사 및 신입생유치 활동영역<개정 2016.07.19.>

## 제5조 (평가위원회)

평가를 주관하며 평가위원회의 기능, 구성, 임기 등에 대해서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#### 제6조 (평가대상 제외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.

- ① 총장
- ② 삭제 <개정 2018.05.31>
- ③ 4개월 이상의 장기연수 및 해외파견 교원<개정 2016.07.19.>
- ④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입학처장, 학생처장, 글로벌대외교류처장, 총무처장, 산학협력단장은 본인이 업적평가 제외를 선택할 수 있다.<신설 2019.05.22.><개정 2020.07 .16.><개정 2022.02 .23><개정 2024.03.01.><개정 2026.03.26.>
- ④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원 <개정 2014.12.16., 2016.07.19., 2017.04.25.>  
<항윤김 ④ → ⑤ 2019.05.22.>

#### 제7조 (평가자료제출)

교원은 교원업적평가보고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원업적평가 위원회에 제출한다

#### 제8조 (평가 영역 및 기준)

- ① 평가영역은 교육활동, 연구활동, 봉사활동, 산학협력활동과 인사사항반영으로 구분하며 영역별 평가항목과 배점은 [별표 1]에 의한다.
- ② <삭제 2019.05.22.>
- ③ <삭제 2019.05.22.>
- ④ <삭제 2019.05.22.>
- ⑤ <삭제 2019.05.22.>
- ⑥ <삭제 2019.05.22.>
- ⑦ 평가기준 및 세부평가기준은 교원업적평가 지침에 의한다.<신설 2019.05.22.>

#### 제9조 (공고)

교원업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업적평가 지침 개정안을 7일 이상 공고해야하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.<신설 2019.05.22.>

#### 제10조 (평가결과 통지 및 공개)

교원업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결과를 개별 교원에게 통지하고,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 할 수 있다.<조윤김 제9조 → 제10조, 2019.05.22.>

#### 제11조 (재심청구)

교원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.<조윤김 제10조 → 제11조, 2019.05.22.>

#### 제12조 (시행규칙)

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

받아 시행한다.<조용김 제11조 → 제12조, 2019.05.22.>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평가대상 기간에 대한 경과 조치)

이 규정 제8조(작성 및 평가요령) 제①항의 평가대상기간을 2003년도에 한하여 01월 01일부터 익년 02월 28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3.10.07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3년 10월 0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규정)

이 규정 시행일에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은 폐지한다.

부 칙 (2013.12.18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4.12.16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 (2015.09.01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 (2016.07.19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 (2017.04.25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

제2조 (경과조치)

이 규정 시행일 현재 보직교수 교학처장, 입학처장, 산학협력센터장은 2017년 교원업적평

가에 대해서 본인이 평가신청 및 제외를 선택할 수 있다.

부 칙 (2018.05.31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9.05.2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0.07.16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0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2.02.23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4.03.01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5.03.2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5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6.03.26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6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교원업적평가 영역별 평가항목 및 배점 <개정 2016.07.19., 2018.05.31., 2022.02.23>

평가영역		평가항목		배점	
I	교육활동	교육활동의 적극성		8	31
		강의의 충실성 및 효율성	강의평가	8	
			교육품질보고서(CQI) 작성	1	
			교무평가	3	
			교수학습법 개선물	2	
		학생생활지도	학생상담	4	
			중도탈락율	5	
II	연구활동	연구실적		15	
III	봉사 및 신입생유치 활동	교내/교외	봉사활동	5	33
		신입생 홍보 및 유치활동	신입생 홍보 및 유치활동	13	
		기여도(정성평가)		10	
		만족도조사 및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율		5	
IV	산학협력활동	산학협력 및 취업지도 활동		18	21
		대학재정기여도(정성평가)		3	
		합계		100	
V	인사사항반영	1.경고 : -0.5/회 2.견책 : -1/회 3.감봉, 정직 : -5/회			
		교내·외 수상 : +1/회			

[별표 2] <삭제 2019.05.22.>

[별표 3] <삭제 2019.05.22.>

[별표 4] <삭제 2019.05.22.>

[별표 5] <삭제 2019.05.22.>

[별표 6] <삭제 2019.05.22.>